

요 약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법안에 따라, 입점업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다양한 표시·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발의되어 있는 다양한 법안들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회에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음
 - 본고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고자 하는 주요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봄¹⁾
 - 플랫폼과 이용자와의 관계(B2C)를 규율하는 경우와, 플랫폼과 다른 사업자(입점업체)와의 관계(B2B)를 규율하는 경우가 있음²⁾
 - 법안의 소관부처도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다양함

〈표 1〉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주요 법안

소관부처	법안	규율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B2B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B2C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B2B, B2C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B2B, B2C

1) 그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 유해 콘텐츠 방지, 알고리즘 설계 원칙, 기업결합 등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함

2) 법안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플랫폼'이라는 용어로 통칭함. 또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입점업체'라는 용어로 표현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B2B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안을 포함하여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³⁾
- 해당 법안은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만을 규율 대상으로 함
 - 예를 들어 정부안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입점업체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용역의 총판매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규율 대상임
 - 소규모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우려가 적고 스타트업에도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산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한 것임
 - 한편 일부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금융상품거래의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음⁴⁾
- 법안에서는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금지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음: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검색·배열 순위의 조작·변경을 통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부당하게 다른 플랫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유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임⁵⁾
- 그 밖에도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서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해당 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거래되는 재화·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형태·기준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⁶⁾
 - 법안에 따라서는, 검색·배열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 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음⁷⁾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 발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210959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2021. 4. 20.
210880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21086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8.
210774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	2021. 1. 28.
210770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210762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1. 25.
2101835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13.

4) 성일종 의원안 등임

5)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은 법안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금지행위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됨

6)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7) 송갑석 의원안 등임

○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전자상거래 거래구조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도 다수 발의되어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전부 개정안이기에 때문에 규율 체계 및 용어 자체를 재정비하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플랫폼 규율과 관련하여 신설된 주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봄⁸⁾
 - 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 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① 전자게시판 제공(정보교환 매개) 서비스, ② 연결 수단 제공 서비스, ③ 중개 서비스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각 유형별로 차등화된 책임과 의무를 적용함⁹⁾
 -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주요 조항을 적용 배제하고 있으며,¹⁰⁾ 개정안 역시 위와 같은 적용 배제 조항을 두고 있음
- 법안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다양한 표시 또는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의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¹¹⁾
 - 플랫폼 및 입점업체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거래와 관련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검색 결과에 순위를 정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는 주요 결정 기준(조회 수, 판매량, 상품 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함
 - 또한 플랫폼 및 입점업체는 맞춤형 광고(소비자의 기호, 연령, 성별, 소비습관, 구매내역 등의 특징에 따른 광고)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함
 -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하고, 이 경우 플랫폼이 직접 제공하는 재화 등과 입점업체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함
 -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청약의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금 환급, 배송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해야 함
- 법안에서는 플랫폼의 책임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음
 - 플랫폼이 중개거래·직매입 상품의 구분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신을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공급·계약서 교부 등을 하여 소비자 오인을 초래한 경우 등에는 입점업체의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8)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21121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1. 8. 18.
21111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211074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6. 10.
211037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1. 5. 25.
21092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30.

9)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의 책임·의무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며, 전자게시판 제공(정보교환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책임·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10) 전자상거래법 제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다음 각호의 금융회사 등이 직접 취급하는 금융상품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회사가 직접 하는 금융상품거래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보험대리점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거래의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11) 부과하는 의무의 종류·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별로 차이가 있음

- 또한 일부 의원안에서는, 플랫폼이 청약의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금 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단독책임을 지도록 규정함¹²⁾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¹³⁾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B2B 관계와 B2C 관계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도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즉, 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함
 - 또한 위와 같이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 중에서도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매출액, 거래금액, 이용자 수, 이용 집중도, 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에 대해서는 대규모 플랫폼으로서 별도로 규율함
- 법안에서는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금지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음: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조건·서비스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고지하는 행위,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허위·과장·기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임
 - 또한 플랫폼은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됨
- 법안에서는 대규모 플랫폼의 의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정함
 - 대규모 플랫폼은 검색 결과, 추천 등을 결정하는 요소 등 콘텐츠의 노출 방식 및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 그러한 기준 중에서 개인화된 기준의 적용 여부 및 내용·범위 등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규모 플랫폼은 입점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예: 서비스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적절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동일 또는 유사한 정보·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직접 제공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또는 자신이 영업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콘텐츠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이 금지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해당 기준에는 플랫폼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수수료·광고비 등) 산정 기준, 정보 노출 방식·순서의 결정 기준, 이용자의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¹⁴⁾은 금융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행위 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플랫폼 규율과 관련하여 전 산업 영역을 아우르는 상기 법안들과는 달리, 동 개정안은 금융상품·서비스의 제공과

12) 전재수 의원안 등임

13) 2020. 12. 11. 전해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369호

14)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55호

관련된 금융플랫폼에 대해 규율하는 것이며, B2B 관계와 B2C 관계를 모두 규율하고자 함

- 개정안은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지급지시전달업 및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플랫폼 운영 관련 규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
- 법안에 의하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플랫폼을 운영하여야 하며,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 우선,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정한 행위가 금지됨(예: 이용자의 성별·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행위, AI·알고리즘으로만 전자금융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전자금융업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체계를 갖추지 않는 행위 등)
 - 해당 금융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업무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주체(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해 플랫폼이 직접 제공하는 금융상품·서비스로 오인하도록 하는 경우)나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오인하도록 해서는 안 됨
 - 또한 다른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금지됨(예: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게 금융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등)
-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와 제휴하는 경우에도 그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데, 향후 입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 플랫폼에 대해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존의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며 규제를 하더라도 플랫폼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맞춤형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있고, 플랫폼 규제 권한과 관련해서도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다름
- 플랫폼을 규제함에 있어서도 전 산업을 아우르는 일반법으로서 규율할 것인지, 금융상품·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금융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수의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중복 적용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현재 발의된 법안들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법안이 발의되거나 규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으며, 향후 입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